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관련 판결문을 수집해왔다. 물론 이렇게 집적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훌륭한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낱낱의 판결문으로는 이들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선고된 3년간의 인격권 침해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 형태, 판결경향, 주요 쟁점별 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연구의 후속 분석에 해당한다. 즉, 대법원을 위시해 각급 법원이 2008년 한 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형태와 판결경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 해 평균 1,000여건에 이르는 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이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소송의 실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분석을 통해 연구를 위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1)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08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법원별 소제기빈도,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 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소송사건의 피고 구성, 매체별 피고 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08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08년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결과 비교,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4)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판결문에 언급된 몇몇 표현들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공익부정’, ‘공인’, ‘피의사실’, ‘단정표현’, ‘의혹제기’, ‘인신공격’, ‘악의성’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3. 분석방법

1) 분석대상

(1) 분석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2)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사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3) 판결이 대부분이고 결정(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등)도 포함시켰으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4)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 소정의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언론인과 함께 공동으로 피소된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홈페이지)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2009년 8월 시행예정인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5)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들 청구나 신청과 병합된 청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6)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결과 수집된 판결은 총 106건이다. 이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과 언론인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 그리고 언론인이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사건이 아닌 경우를 모두 제외한 결과 96건이 남았다.

(7) 위 96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별로 각각을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판결의 총 빈도는 116건이었다. 이 116건이 통계적 분석의 기본적인 모수이다.

(8) 한편, 위 116건은 정정·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16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78건이 모수가 된다.

(9) 손해배상청구만을 대상으로 처리결과나 청구액, 인용액, 기각사유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청구권별로 환산한 위 178건의 빈도 중 손해배상청구의 빈도인 96건이 모수가 된다.

2) 자료수집 방법

법원은 2006. 5. 1.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

결을 대상으로 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 보도&성명권 ⑦보도&음성권 ⑧보도&사생활 ⑨보도&프라이버시 ⑩보도&퍼블리시티’로 했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했고 판결 검색의 최종일은 2009. 2. 24.이다.

3)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 원 명 04. 심 급	05. 청구의 종류 06. 청구취지상의 침해유형 07. 인용된 침해유형
원 고	08. 원 고 명 09. 대표 원고 분류 10.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1. 사건 피고명 12. 사건 피고구성 13. 매 체 명	14. 매체별 피고구성 15.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 체 분 류	16. 대 분 류 17. 세부분류 17-1. 일간지 종별 분류	17-2. 방송 분류 17-3. 인터넷매체 분류
보도내용 분류	18. 보도내용 분류 18-1. 방송 외 기사유형	18-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9. 청구별 처리결과 19-1. 정정보도 19-2. 반론보도	19-3. 손해배상 19-4. 기 타
원·상고심 결과	20. 심급별 결과 20-1. 1심 20-2. 항소심	20-3. 상고심 20-4. 파기환송심
기 타	21. 원고 원심유지 여부 22. 사건 특성 23. 조정신청 여부	24. 조정신청 결과 25. 보도일자(언론중재법 시행 기준)
손 해 배 상	26. 사건 청구액 27. 사건 인용액 28. 매체별 청구액	29. 매체별 인용액 30. 손해배상 기각사유
반 론 보 도	31. 반론 기각사유	32. 반론 각하사유

4) 코딩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 코딩의 기본 단위는 언론매체별이다. 즉, 1개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다수인 경우 이를 매체별로 구분, 각 코딩하여 소송에 연루되는 매체별 현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했다. 단, 사건의 특성상 개인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분류했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저명성 있는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3)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는 경우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가 ○○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했다.

(4) 사건 피고 구성

① 사건을 매체별로 분류하지 않은 96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공동 피소된 피고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는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소송하기도 하지만 관련 언론인을 함께 제소

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속성상 한 사안은 여러 언론에 걸쳐 동시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수의 언론사가 공동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잦다. 이에 본 분석유목을 통해 피고가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사건 피고구성은 언론사, 언론인, 언론사 다수, 언론인 다수, '비언론' 간의 다양한 조합이다.

③ '비언론'이란 언론인이 아닌 제보자, 투고자, 기고자, 보도자료 배포자 또는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을 말한다. '비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 '비언론'이 언론사나 언론인과 공동으로 피소된 경우나 포털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피고구성을 '비언론'으로 분류했다.

(5) 매체별 피고 구성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기사를 직접 작성·편집한 기자나 프로듀서, 감독책임자 등으로 분류했다. 그 외 언론인(행정업무자 등)과 외주 제작사 및 소속 직원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6)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7) 방송 분류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했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했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뉴스 후 등

③ 「9시 뉴스」 내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했다.

④ 「KBS스페셜」, 「미디어 비평」 등은 교양·정보로 분류했다.

(8)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와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9)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했다.

(10) 기타 사건의 특성

① 기타 사건의 특성은 대표 원고 분류(구체적 분석항목상의 변수 09번)와 달리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에만 조사한 것이다.

②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 인물로 판단’, ‘보도의 공익성 부정’, ‘모멸적 의견으로서 그 표현의 한계를 일탈’로 분류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경우이다.

(11)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동일 매체에 해당하는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했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2장

분석결과

1. 소송제기현황

1) 법원별 소송빈도

수집된 민사 언론소송판결 96건을 피고 언론사별로 분리한 매체별 빈도는 116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빈도가 이후의 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통계적 모수이다. 이 116건을 대상으로 법원별 소송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1-1〉 법원별 소송빈도

법원		빈도	비율(%)
대법원(10.3%)		12	100.0
고등법원(19.8%)	서울고등법원	21	91.3
	대구고등법원	1	4.3
	부산고등법원	1	4.3
	소계	23	100.0
지방법원(69.8%)	서울중앙지방법원	39	48.1
	서울남부지방법원	25	30.9
	서울동부지방법원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수원지방법원	3	3.7
	의정부지방법원	1	1.2
	대전지방법원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	1.2
	광주지방법원	1	1.2
	전주지방법원	1	1.2
	제주지방법원	1	1.2
	창원지방법원	3	3.7
	춘천지방법원	1	1.2
	소계	81	100.0
	합계		116

법원별로는 대법원이 12건(10.3%), 고등법원이 23건(19.8%), 지방법원이 81건(69.8%)이었다.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21건(91.3%)으로 대부분이었고, 대구와 부산고등법원이 각 1건이었다. 고등법원이 처리한 사건 중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건에 대한 환송후심 판결도 2건 있었다.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39건(48.1%)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5건(30.9%),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관할 시법원 포함)이 각 3건(3.7%) 등이었다.

2) 심급별 소송빈도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로 빈도를 살펴보았다. 심급별 빈도는 1심이 79건(68.1%), 항소심이 23건(19.8%), 상고심이 12건(10.3%),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2건(1.7%)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판결이 21건,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이 2건 있었다.

〈표 1-2〉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심		79	68.1
항 소 심	고등법원	21	18.1
	지방법원 항소부	2	1.7
	소 계	23	19.8
상 고 심		12	10.3
환송후심		2	1.7
합 계		116	100.0

3) 상소율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79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52건으로 항소율은 65.8%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항소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은 27건으로 34.2%였다. 항소심 판결 23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원고 또는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2건으로 상고율은 52.2%로 나타났다.

〈표 1-3〉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건수	상소율(%)
1심		79	52	65.8
항소심	고등법원	21	11	52.4
	지방법원 항소부	2	1	50.0
	소 계	23	12	52.2

4)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48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42건(36.2%)으로 다음이었다. 이어 반론보도청구 6건(5.2%), 기타 손해배상청구¹⁾ 5건(4.3%), 정정·반론보도청구 4건(3.4%), 정정보도청구 3건(2.6%),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사삭제청구와 금지가처분이 각 2건(1.7%)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2008년 한 해 수집된 기타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모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타 청구로는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었다.

정정·손배청구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96건(53.9%), 정정보도청구 58건(32.6%), 반론보도청구 13건(7.3%), 기타 손해배상청구 5건(2.8%), 추후보도청구 2건(1.1%), 금지가처분 2건(1.1%), 기타청구(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	3	2.6
정 정 / 반 론	4	3.4
정정/반론/손해배상	1	0.9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사삭제	2	1.7
정정/손해배상	48	41.4
반 론	6	5.2
추후/손해배상	2	1.7
손 해 배 상	42	36.2
손해배상/기타	1	0.9
기타 손해배상	5	4.3
금 지 가 처 분	2	1.7
합 계	116	100.0

1) 기타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란 현행법상 언론매체로 분류되지 않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포털사이트나 범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말한다. 200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은 이런 매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1-5〉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보 도	58	32.6
반 론 보 도	13	7.3
추 후 보 도	2	1.1
손 해 배 상	96	53.9
기 사 삭 제	1	0.6
금 지 가 처 분	2	1.1
기타 손해배상	5	2.8
기 타	1	0.6
합 계	178	100.0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 명예훼손이 93건(8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5건(4.3%), 명예·초상권·성명권 침해 3건(2.6%), 명예·사생활 침해, 명예·상호권²⁾ 침해, 명예·초상권·상호권 침해, 초상권 침해가 각각 2건(1.7%) 등이었다.

침해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분리하여 각각의 침해유형별로 단순빈도를 구해본 결과, 명예훼손이 110건, 초상권 침해가 15건, 사생활 침해가 6건, 성명권 침해가 4건, 상호권 침해가 4건 등이었다.

〈표 1-6〉 침해유형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명 예	93	80.2
명 예 / 신 용	1	0.9
명 예 / 사 생활	2	1.7
명 예 / 상 호	2	1.7
명 예 / 초 상	5	4.3
명 예 / 초 상 / 사 생활	1	0.9
명 예 / 초 상 / 성 명	3	2.6
명 예 / 초 상 / 상 호	2	1.7
명 예 / 초 상 / 성 명 / 사 생활	1	0.9

2) 상호권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점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성명과 같은 인격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호권은 기업에 고착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적 성질도 갖는다.

사생활/기타	1	0.9
초 상	2	1.7
초상/사생활	1	0.9
기 타	2	1.7
합 계	116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소송 당사자인 피고 언론사의 매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 방송이 38건(32.8%)으로 가장 높았고, 일간신문이 32건(27.6%)으로 그 다음이었다. 인터넷매체도 21건(18.1%)으로 적지 않았다. 주간신문은 14건(12.1%), 뉴스통신은 6건(5.2%), 월간지는 5건(4.3%)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21건(65.6%)으로 소송 빈도가 가장 높았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30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 매체 중에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이 9건(42.9%)이었고, 언론사닷컴이 7건(33.3%), 포털 사이트가 5건(23.8%)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 체 유 형	빈 도	비 율(%)
일 간	32	27.6
주 간	14	12.1
월 간	5	4.3
방 송	38	32.8
뉴 스 통 신	6	5.2
인 터 넷	21	18.1
합 계	116	100.0

<표 1-8> 일간지 종별 빈도

일간지종별	빈 도	비 율(%)
중 앙 종 합	21	65.6
지 역 종 합	8	25.0
일 반 경 제	1	3.1
외 국 어	2	6.2
합 계	32	100.0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 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30	78.9
지 방	4	10.5
민 방	1	2.6
라 디 오	1	2.6
케 이 블	2	5.3
합 계	38	100.0

〈표 1-10〉 인터넷매체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유형	빈 도	비 율(%)
인터넷신문	9	42.9
연론사닷컴	7	33.3
포털사이트	5	23.8
계	21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방송매체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78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촉발시킨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66건(84.6%)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이트/기타가 4건(5.1%), 스트레이트/칼럼기사가 3건(3.8%), 스트레이트/사설기사가 2건(2.6%)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8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8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시사·고발프로그램이 14건(36.8%), 뉴스가 13건(34.2%), 교양·정보는 8건(21.0%)이었으며 드라마도 2건 있었다.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 도 유 형	빈 도	비 율(%)
스트레이트	66	84.6
스트레이트/만평	1	1.3
스트레이트/사설	2	2.6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	1.3
스트레이트/기타	4	5.1
스트레이트/칼럼	3	3.8
칼 럼	1	1.3
합 계	78	10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방송 유형	빈 도	비 율(%)
뉴 스	13	34.2
시사·고발	14	36.8
교양·정보	8	21.0
드 라 마	2	5.3
기 타	1	2.6
합 계	38	100.0

8) 사건 피고구성

사건을 언론사별로 나누기 전인 각 사건(총 96건)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피소된 피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 또는 담당 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건의 피고는 언론사 단독이 44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나, 언론사+언론인 다수 17건(17.7%), 언론사+언론인 12건(12.5%), 언론사 다수+비언론³⁾이 6건(6.3%), 언론사 다수+언론인이 4건(4.2%), 언론사 다수와 언론인 단독이 각 3건(3.1%) 등이었다.

〈표 1-13〉 사건 피고 구성

사건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44	45.8
언론사/언론인	12	12.5
언론사/언론인/비언론	1	1.0
언론사/언론인 다수	17	17.7
언론사/언론인 다수/비언론	2	2.1
언론사/비언론	6	6.3
언론사 다수	3	3.1
언론사 다수/언론인	4	4.2
언론사 다수/비언론	1	1.0
언 론 인	3	3.1
언론인/비언론	1	1.0
언 론 인 다수	1	1.0
비 언 론	1	1.0
합 계	96	100.0

3) '비언론'이란 언론인이 아닌 제보자, 투고자, 기고자, 보도자료 배포자 또는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을 말하는데 '비언론'이 각 사건의 피고에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합산해 보면 12건으로 적지 않았다.

9) 매체별 피고구성

각 사건의 피고를 언론사별로 나눈 116건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피소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사 단독이 60건(51.7%)으로 절반을 넘어서 두 건 중 한 건은 언론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었다. 언론사+담당(담당기자나 담당PD)은 24건(20.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비언론이 5건(4.3%),⁴⁾ 담당 단독과 언론사+대표+담당, 언론사+국장+담당이 각 3건(2.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언론사가 소송에 포함된 빈도를 별도로 합산해본 결과 105건(54.1%)이었다. 또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을 직위별로 나누어 각각을 합산해 보니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가 4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대표는 12건(6.2%), 편집국장은 11건(5.7%), 부장이나 차장 등 데스크는 8건(4.1%)이었다.

원고들은 언론사 대표의 경우 매체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편집인이나 부장·차장 등의 경우 기사의 취사선택이나 편집에 관여한 책임을 각각 물어 담당 기자나 프로듀서와 함께 제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4〉 매체별 피고 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60	51.7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논설/편집인/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본부장/국장/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국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담당	1	0.9
언론사/대표/담당	3	2.6
언론사/국장	2	1.7
언론사/국장/부장/담당	2	1.7
언론사/국장/담당	3	2.6
언론사/부장/담당	2	1.7
언론사/편집장/편집인	1	0.9
언론사/담당	24	20.6
언론사/기타	1	0.9
대 표	2	1.7
국 장 / 담 당	1	0.9
담 당	3	2.6
비 언 론	5	4.3
합 계	116	100.0

4) 이 5건 모두 인터넷포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표 1-15〉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105	54.1
대표이사	12	6.2
편집인	5	2.6
편집장	1	0.5
논설위원	1	0.5
본부장	1	0.5
편집국장	11	5.7
부장, 차장(데스크)	8	4.1
담당(기자·PD)	44	22.7
기타	1	0.5
비언론	5	2.6
계	194	100.0

2.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 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60.3%, 원고 패소율은 39.7%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2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 사건들의 경우 58.2%, 항소심 사건들의 경우 82.6%, 상고심 사건들의 경우 41.7%로 각각 조사되었다. 항소심 사건들의 원고 승소율이 80%대를 넘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심	46(58.2)	33(41.8)	79(100.0)
항소심	19(82.6)	4(17.4)	23(100.0)
상고심	5(41.7)	7(58.3)	12(100.0)
환송후심	0(0.0)	2(100.0)	2(100.0)
합계	70(60.3)	46(39.7)	116(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항소심 23건과 상고심 12건을 합산한 35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0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9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소심 82.9%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과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반복된 경우는 각각 3건으로 원심판결 반복비율은 17.1%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23건 중 15건은 원고 1심 승소판결을 유지했고, 5건은 패소판결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3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원심 반복비율은 13.0%였다.

상고심의 경우, 12건 중 5건은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고, 4건은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

며, 나머지 3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원고승소 판결을 반복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의 원심 번복비율은 25.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항소심	23(100.0)	15(65.2)	5(21.7)	0(0.0)	3(13.0)
상고심	12(100.0)	5(41.7)	4(33.3)	3(25.0)	0(0.0)
계	35(100.0)	20(57.1)	9(25.7)	3(8.6)	3(8.6)
		29(82.9)		6(17.1)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기타 손해배상사건과 기타사건을 제외하면 반론보도가 76.9%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사건이 그 뒤를 이은 52.1%를 나타냈으며, 정정보도사건이 46.6%로 비교적 낮았다.

정정보도청구의 원고 패소율은 53.4%로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5.5%p, 반론보도청구보다는 30.3%p 높았다. 정정보도 기각사유 중에는 보도내용에 진실성 및 진실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가장 많았다. 기각 사유 중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측의 반론이 기재된 바 있으므로 위자료의 지급 이외에 정정보도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⁵⁾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고, 정정보도가 원고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볼 수 없다”⁶⁾고 판시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삭제 청구는 방송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한 건 있었다. 원고는 재판부에 피고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게시된 문제의 방송내용을 전부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내용 전부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물 삭제 등은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다시보기’란에 원보도에 덧붙여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라”고 판시했다.⁷⁾

5)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나217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419 판결

금지가처분이란 침해가 예견되는 보도에 대해 보도 전에 신청하는 예방차원의 조치를 말하는데 분석대상 금지가처분 판결 2건의 경우 모두 기각되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통해 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지가처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배포금지 또는 방송금지를 명할 만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해야 한다. 또 법관이 볼 때 신청인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한다.⁸⁾ 그밖에 배포금지 혹은 방송금지를 제외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그 요건이라 할 수 있다.⁹⁾ 재판부는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5건 모두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 모두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실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¹⁰⁾

한편, 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게시물의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확산에 관하여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¹¹⁾

기타 사건으로는 추후보도청구 2건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위반 확인 및 조정금 지급청구’가 1건이 있었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2건 모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제기되어 두 건 모두 인용되었다.¹²⁾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위반 확인 및 조정금 지급청구사건의 경우,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확보한 원고는 집행문부여의 소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하면 될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별도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¹³⁾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14. 결정 2008카합415 판결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9. 16. 결정 2008카합1501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7. 선고 2007가합1046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7가합90956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가합57072 판결

〈표 2-3〉 청구별 처리결과

청 구 명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정보도	27(46.6)	31(53.4)	58(100.0)
반론보도	10(76.9)	3(23.1)	13(100.0)
손해배상	50(52.1)	46(47.9)	96(100.0)
기사삭제		1(100.0)	1(100.0)
금지가처분		2(100.0)	2(100.0)
기타 손해배상	5(100.0)		5(100.0)
기타(추후청구 등)	2(66.7)	1(33.3)	3(100.0)
합 계	94(52.8)	84(47.2)	178(100.0)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절반보다 조금 높은 53.8%였고, 명예와 초상권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는 80.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명예와 초상권 그리고 성명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나 초상권 단독 침해의 경우 등은 10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수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초상권침해가 인정된 사례로는, 뉴스에서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토대로 범죄 혐의자의 초상 등을 공개했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건,¹⁴⁾ 공개수배 방송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초상 등을 공개했으나 피해자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¹⁵⁾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주회 장면에 대한 촬영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방송한 사건¹⁶⁾ 등이 있었다.

반면, 법원은 소위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관련 피의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보도된 사안에서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라는 의미에서의 공적인물로 볼 수 있어 얼굴사진 게재 등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¹⁷⁾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문제에 대해 방송하면서 동거남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은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표한 사건,¹⁸⁾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기한 사건,¹⁹⁾ 대학생시절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공적 활동을 한 바 없는 원고의 실명과 직장사진 및 영업활동을 보도한 사건²⁰⁾ 등이 있었다.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원고 회사의 상호, 상품포장용 박스, 출입구, 내부전경, 상점 주변의 지형지물 등을 방영하여 오인케 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 경우 판결은 상호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²¹⁾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 패	
명 예	50(53.8)	43(46.2)	93(100.0)
명예/신용	1(100.0)		1(100.0)
명예/사생활	1(50.0)	1(50.0)	2(100.0)
명예/상호	2(100.0)		2(100.0)
명예/초상	4(80.0)	1(20.0)	5(100.0)
명예/초상/사생활	1(100.0)		1(100.0)
명예/초상/성명	3(100.0)		3(100.0)
명예/초상/상호	2(100.0)		2(100.0)
명예/초상/성명/사생활	1(100.0)		1(100.0)
사생활/기타		1(100.0)	1(100.0)
초 상	2(100.0)		2(100.0)
초상/사생활	1(100.0)		1(100.0)
기 타	2(100.0)		2(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안의 숫자는 %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가단40534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1266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11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4798 판결

5)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사건 중 원고 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와 기업이 각 80.0%로 가장 높았고 일반인이 65.3%였으며, 공직인물과 언론사의 경우 각각 33.3%와 20.0%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의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의 승소율이 일반인에 비해 14.7%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자와 공직인물을 합산한 공인 원고의 승소율은 56.7%에 그쳐 일반인보다 8.6%p 낮았다.²²⁾

재판부는 경찰관의 범죄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에 대한 언론매체의 감시 및 비판기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쉽게 제한될 수 없다”²³⁾거나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직인물인 경우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고 판시하여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혹은 공직인물인지 사적인물인지에 따라 그 심사를 달리 할 것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비록 위 발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상 그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²⁵⁾ 이처럼 언론사가 원고인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은 보도내용의 진실 상당성을 부인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공직자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부정하기도 했다.²⁶⁾

공직인물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대형교회의 대표자, 사단법인 스포츠위원회의 전임 회장, 유명 변호사 등과 같은 기타 공직인물의 승소율이 비교적 높는데 반해, 언론인의 경우 모두 패소해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22) 참고로, 2005~2007년도 선고대상 언론소송 판결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3년간 공직자 승소율은 51.9%로 일반인의 승소율 55.9%보다 4.0%p 낮았다. 또한, 공직자와 공직인물을 합한 공인의 원고 승소율은 35.7%에 그쳐 일반인에 비해 20.2%p 낮았다. 언론중재위원회(2007).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36면 참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가합52401 판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2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43008 판결

〈표 2-5〉 대표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대표원고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공 직 자	12(80.0)	3(20.0)	15(100.0)
공적인물	5(33.3)	10(66.7)	15(100.0)
일 반 인	32(65.3)	17(34.7)	49(100.0)
공공단체	1(100.0)		1(100.0)
교육기관	1(100.0)		1(100.0)
국가기관	3(75.0)	1(25.0)	4(100.0)
기 업	8(80.0)	2(20.0)	10(100.0)
일반단체	2(40.0)	3(60.0)	5(100.0)
언 론 사	2(20.0)	8(80.0)	10(100.0)
종교단체	1(33.3)	2(66.7)	3(100.0)
지 자 체	2(100.0)		2(100.0)
기 타	1(100.0)		1(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처리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치인	1(50.0)	1(50.0)	2(100.0)
언론인		7(100.0)	7(100.0)
기업가		1(100.0)	1(100.0)
기 타	4(80.0)	1(20.0)	5(100.0)
합 계	5(33.3)	10(66.7)	15(10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이 76.2%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일간신문과 방송매체 상대 원고 승소율이 각각 68.8%와 57.9%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주간신문은 35.7%에 그쳤다. 그밖에 월간지와 뉴스통신의 경우 각각 60.0%와 33.3%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으나 두 매체 모두 빈도가 너무 낮아 별 의미는 없다.

일간지 중에는 지방종합일간지(87.5%)가 중앙종합일간지(61.9%)보다 원고 승소율이 25.6%p 높았다. 방

송의 경우, 중앙방송의 원고 승소율이 70.0%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지방방송의 경우 25.0%에 머물렀다. 인터넷 매체 중에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 77.8%, 언론사닷컴이 57.1%의 원고 승소율을 각각 나타냈다. 그러나 빈도가 낮아 역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일 간	22(68.8)	10(31.2)	32(100.0)
주 간	5(35.7)	9(64.3)	14(100.0)
월 간	3(60.0)	2(40.0)	5(100.0)
방 송	22(57.9)	16(42.1)	38(100.0)
뉴스통신	2(33.3)	4(66.7)	6(100.0)
인 터 넷	16(76.2)	5(23.8)	21(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일간지종별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앙종합	13(61.9)	8(38.1)	21(100.0)
지역종합	7(87.5)	1(12.5)	8(100.0)
일반경제	1(100.0)		1(100.0)
외 국 어	1(50.0)	1(50.0)	2(100.0)
합계	22(68.8)	10(31.2)	32(100.0)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 앙	21(70.0)	9(30.0)	30(100.0)
지 방	1(25.0)	3(75.0)	4(100.0)
민 방		1(100.0)	1(100.0)
라 디 오		1(100.0)	1(100.0)
케 이 블		2(100.0)	2(100.0)
합 계	22(57.9)	16(42.1)	38(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인터넷신문	7(77.8)	2(22.2)	9(100.0)
언론사닷컴	4(57.1)	3(42.9)	7(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계	16(76.2)	5(23.8)	21(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소재기 대상기사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이 62.1%로 방송의 매체 보도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방송매체 보도유형 중에서는 시사·고발프로그램(78.6%) 대상 원고 승소율이 뉴스 프로그램(46.2%)보다 32.4%p나 높았다. 이에 비해 교양·정보 프로그램 대상 원고승소율은 25.0%에 그쳤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이른바 의견성 기사가 인용된 사례로는 화장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속된 것이라는 전제사실에 근거해 원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 자치조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설기사에 대해 의견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명한 사건,²⁷⁾ 한 대학의 총장 이자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 원고가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의 이름을 올려 출판했다며 원고 소속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비판한 기고기사에 대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²⁸⁾ 등이 있었다.

드라마에 대한 판결 중에는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을 촬영하여 드라마에 내보낸 사안에서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²⁹⁾이 있었다.

27)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7709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판결

29)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42201 판결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스트레이트	41(62.1)	25(37.9)	66(100.0)
스트레이트/만평		1(100.0)	1(100.0)
스트레이트/사설	2(100.0)		2(100.0)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100.0)	1(100.0)
스트레이트/칼럼		3(100.0)	3(100.0)
스트레이트/기타	4(100.0)		4(100.0)
칼 럼	1(100.0)		1(100.0)
합 계	48(61.5)	30(38.5)	78(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뉴 스	6(46.2)	7(53.8)	13(100.0)
시사·고발	11(78.6)	3(21.4)	14(100.0)
교양·정보	2(25.0)	6(75.0)	8(100.0)
드 라 마	2(100.0)		2(100.0)
기 타	1(100.0)		1(100.0)
합 계	22(57.9)	16(42.1)	38(100.0)

※ ()안의 숫자는 %

3. 손해배상청구사건

매체별 소송건수 116건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눌 경우 178건의 청구로 환산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³⁰⁾ 이중 손해배상청구 96건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96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은 50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5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보다는 8.2%p 낮은 것이지만 정정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 46.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이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96 (100.0)	50 (52.1)	46 (47.9)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낮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중앙액(Median)³¹⁾ 과 최빈액(Mode)³²⁾을 함께 조사했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론인

30) <표 1-5> 참조

31)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함

32) 빈도수가 가장 높은 액수를 말함

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했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7억 4,617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1억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백만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96건 중 63건을 차지해 65.6%나 되었고, 최고 청구액은 119억 9,000만원이었다. 최고 청구액은 지역 민영방송사 대표였던 원고가 미국을 위하여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와 원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방송사 및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이었다.³³⁾

〈표 3-2〉 청구액

청구액 (원)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96	746,169,229	100,000,000	100,000,000	1,000,000	11,99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50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340만원, 중앙액은 1,100만원으로 인용액 평균이 중앙액의 2배 이상이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원고에 대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며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³⁴⁾ 그 외 1억 원과 7천만 원이 각 1건, 6천만 원과 2,500만원이 각 2건 있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50건 중 항소심 판결은 12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5건이었다. 위 상소심 17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7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반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2건을 제외한 15건의 경우, 원심 인용액을 감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원심 인용액보다 증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즉, 나머지 13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7가합22762, 2007가합53582(병합)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87 판결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표현방법, 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생활 근거지,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 인터뷰 장면 방송시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와 경력,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원고들의 모습이 방영된 시간 및 프로그램,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계속 보도한 점, 주로 1면에 배치된 점, 사용된 어휘에 원고를 비난하는 목적이 드러난 점,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는 점, 원고 측이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 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인용액

인용액 (원)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배상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되 2천만 원 범위 내인 경우가 26.0%로 전체 손해배상청구 인용사건의 약 1/4을 차지했다. 인용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역시 전체의 26.0%로 1/4을 넘었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빈 도	5백만 이하	5백만초과 ~1천만	1천만초과 ~2천만	2천만초과 ~3천만	3천만초과 ~5천만	5천만초과 ~7천만	7천만초과 ~1억	1억초과 ~1억5천
50 (100.0)	11 (22.0)	13 (26.0)	13 (26.0)	5 (10.0)	2 (4.0)	3 (6.0)	1 (2.0)	2 (4.0)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인용액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인격권 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집계해본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평균은 2,427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이었고, 초상권 침해 단독의 경우, 평균은 약 4,467만 원, 중앙액이 6,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 인용 최고액은 원고들의 연주장면이 원고들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드라마에 방송된 사안으로 원고인 연주자 4인에게 모두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한 사건이었다.³⁵⁾ 이 사건의 원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4인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인정하는데 그쳤는데 상고심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원심의 7.5배에 이른다.³⁶⁾

상호권 침해가 포함된 사안으로는 원산지를 속여 홍삼 가공품을 판매한 홍삼 가공업체를 고발하는 뉴스에서 배경화면에 실제 적발된 업체가 아닌 원고 업체의 상호와 내부전경, 출입구 등을 식별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 방송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³⁷⁾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침해 유형	인용 빈도	평균(원)
명 예	33	24,272,727
사생활/명예	2	40,000,000
상호/명예	2	25,000,000
성명/사생활/명예	1	5,000,000
초 상	3	44,666,667
초상/명예	4	17,000,000
초상/사생활	1	6,000,000
초상/성명/명예	2	12,000,000
기 타	2	1,000,000
합 계	50	23,4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별로 인용액의 평균을 보면,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약 2,436만 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인용액 평균 약 1,460만 원보다 1,000만 원 가까이 많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의 인용액 평균이 약 1,513만 원이었고, 공적인물은 1,333만 원이었다. 공적인물 중에는 기타 유명인과 정치인의 인용액 평균이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빈도가 낮아 별 의미는 없다.

35)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42201 판결

3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11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4798 판결

〈표 3-6〉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소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개 인	공직자	11	8	72.7	15,125,000
	공적인물	13	3	23.1	13,333,333
	일반인	45	28	62.2	24,357,143
단 체	언론사	10	2	20.0	60,000,000
	기업체	7	5	71.4	15,200,000
	공공단체	1	1	100.0	10,000,000
	종교단체	3	1	33.3	70,000,000
	교육기관	1	1	100.0	50,000,000
	일반단체	4		0.0	0
	기타	1	1	100.0	1,000,000
	계	96	50	52.1	23,4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소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정치인	1	1	100.0	10,000,000
기업가	1	0	0.0	
언론인	7	0	0.0	
기타 유명인	4	2	50.0	15,000,000
계	13	3	23.1	1,333,333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은(빈도가 2건 이하의 제외) 월간지가 75.0%로 가장 높았고, 지방종합일간지가 66.7%, 인터넷매체가 62.5%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앙방송은 61.5%, 중앙종합일간지는 50.0%, 주간신문은 33.3% 등이었다.

인용액 평균 현황은 인터넷매체가 3,610만원(중앙액 1,550만원, 최빈액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가 3,000만원, 중앙종합일간지가 2,800만원, 중앙방송이 약 2,269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매체유형별 인용액은 언론사 단독의 부담액뿐만 아니라 소속 언론인에게 명한 부담액까지를 합산한 액수 또는 연대하여 지게 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금액을 포함한 액수이다.

〈표 3-8〉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빈도	원고승소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일 간	중앙종합	16	8(50.0)	28,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	150,000,000
	지방종합	6	4(66.7)	8,000,000	8,000,000	10,000,000	6,000,000	10,000,000
	경제지	1	1(100.0)	20,000,000				
	외국어	2	1(50.0)	10,000,000				
	소계	25	14(56.0)	20,428,571	10,000,000	10,000,000	3,000,000	150,000,000
방 송	중앙	26	16(61.5)	22,678,500	13,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0
	지방	4	1(25.0)	25,000,000				
	민방	1	0(0.0)					
	라디오	1	0(0.0)					
	케이블	1	0(0.0)					
소계	33	17(51.5)	22,823,529	14,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0	
주간		12	4(33.3)	575,000	5,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0
월간		4	3(75.0)	3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	50,000,000
뉴스통신		6	2(33.3)	11,000,000				
인터넷		16	10(62.5)	36,100,000	15,500,000	20,000,000	5,000,000	150,000,000
합계		96	50(52.1)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 ()안의 숫자는 %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96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51건(53.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건수는 26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51.0%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 승소율 47.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리 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96	51 (100.0)	26 (51.0)	25 (49.0)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 기각 사유

언론사건에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2008년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된 사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사유 즉,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을 인정해 기각한 경우가 27건(58.7%) 이었고, 기각 사유에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이 포함된 것까지 합산할 경우 30건(65.2%)에 이르렀다.

또, 기각 사유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포함된 경우가 모두 6건(13.0%)을 차지해 그 비율이 적지 않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도 모두 합할 경우 3건 있었다.

기타사유를 살펴보면, 정정보도를 하는 것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기각한 것이 2건,³⁸⁾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기각한 것이 4건,³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나 의견을 보도하지 않았다하여 기각한 것 1건⁴⁰⁾ 등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 기각사유

손해배상 기각사유	빈 도	비 율(%)
진실상당성	23	50.0
진 실 성	4	8.7
불 특 정	4	8.7
시 효 소 멸	2	4.3
진실상당성/기타	1	2.2
불특정/적법의견	1	2.2
불특정/진실상당성	1	2.2
적 법 의 견	1	2.2
적법의견/진실성	1	2.2
기 타	8	17.4
합 계	46	100.0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419 판결

3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43008 판결

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15678 판결

4.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분석대상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58건으로 조사되었다. 처리결과 원고 승소율이 46.6%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보다 13.7%p 낮게 나타났다. 1심 원고 승소율만 보면 이보다 높은 54.3%이지만 이것 역시 전체 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 58.2%보다 3.9%p 낮은 것이다. 한편, 정정보도가 청구된 항소심 사건과 상고심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각각 20.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정정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구 분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1 심	46	25	54.3
항 소 심	5	1	20.0
상 고 심	5	1	20.0
환송후심	2	0	0.0
합 계	58	27	46.6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13건으로 조사되었다. 처리결과 원고 승소율이 76.9%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에 비해 16.6%p 높게 나타났다. 1심 원고 승소율의 경우도 72.7%로 전체 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 58.2%에 비해 14.5%p 높았다. 항소심 사건은 2건이었는데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표 4-2〉 반론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구 분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1 심	11	8	72.7
항소심	2	2	100.0
상고심/환송후심			
합 계	13	10	76.9

3)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결하게 된다. 분석대상 반론보도청구 13건 중 기각된 3건의 경우 모두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한편, 법원은 신청인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낸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적으로 “자체적인 정책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언론 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판시해 정부기관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의 일단을 피력했다.⁴¹⁾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카기5982 판결

5.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매체별 소송건 116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78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2008년 분석대상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2008년 분석대상판결 중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5.3%로 4건에 1건 꼴로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반론보도청구가 38.5%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32.8%,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1.9%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언론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비율(%)
정 정	58	19	32.8
반 론	13	5	38.5
손해배상	96	21	21.9
기사삭제	1		
금지가처분	2		
기타 손해배상	5		
기 타	3		
계	178	45	25.3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분석대상 판결 중 우리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45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21건의 경우, 16건은 원고 일부 승소했고 5건은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는 모두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도 원고 일부승소가 8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히려 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의 경우 빈도는 적지만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던 18건의 경우 10건이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8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

42)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기는 대부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있었지만 상고심의 경우 2006년에 신청된 경우도 있었다.

났다. 그밖에 위원회의 조정 시에는 조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으나 법원에서 1,200만원의 배상액을 인용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조정당시 취하된 5건의 경우, 1건만 인용되었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조정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	0	2
		피신청인 이의신청	15	12	3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4	4	0
		조정불성립	18	10	8
	각 하		1	1	0
	취 하		5	1	4
	합 계		45	28	17

3)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모두 21건이었는데 법원은 이중 13건을 인용하고 8건을 기각했다. 이를 위원회의 조정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10건의 경우 3건을 제외한 7건(70%)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된 6건의 경우 4건은 인용되고 2건은 기각되었으며, 취하된 4건은 3건이 기각되었고 1건만 인용되었다. 그밖에 기간도과로 각하된 1건은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구 분	합 계		조정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취 하		각 하	
청구건수	21		10		6		4		1	
법원 처리결과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13	8	7	3	4	2	1	3	1	0

4)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모두 19건이었는데 법원은 이중 12건을 인용하고 7건을 기각했다. 이를 위원회의 조정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9건의 경우 2건을 제외한 7건(77.8%)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정청구에 대해 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의 대다수가 법원에 의해 받

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에 자동 소제기 간주된 후 정정보도가 인용된 위원회의 조정결정 7건에 대해 조정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결정한 사례는 3건에 그쳤고, 나머지 4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한 사례였다. 특이한 점은 위원회가 정정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로 조정결정한 위 4건 모두 이의신청의 주체가 피신청인이라는 점이다.

한편,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2건의 정정청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각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정정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자동 소 제기된 사건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보도에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정정청구를 기각했다.⁴³⁾ 다음 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법원은 기사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반론보도만 인용했다.⁴⁴⁾

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는 9건 중 5건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4건은 기각되어 인용률이 55.6%였다. 그 밖에 원고가 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취하한 뒤 법원에 제소했으나 적법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도 있었다.⁴⁵⁾

〈표 5-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구 분	합 계		조정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취 하		각 하	
청구건수	19		9		9		1		0	
법 원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처리결과	12	7	7	2	5	4	0	1	0	0

5)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우리 위원회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2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반론청구사건 3건의 경우 2건은 기각되고 한 건은 인용되었다.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가합52401 판결
 44)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나41852 판결
 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12799 판결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 법원에서는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한 것도 있었고,⁴⁶⁾ 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 2배 이상의 긴 내용을 방송하라고 판결한 경우⁴⁷⁾도 있었다.

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2008년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 위원회 조정액 평균은 약 333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 평균 2,340만 원의 14.2%로 법원의 인용액에 비해 약 1/7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275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100만 원의 1/4 수준이었다.

참고로, 2008년 한 해 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한 9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을 법원 인용액과 비교해 본 결과,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 약 232만 원은 법원 인용액의 평균 대비 약 9.9% 수준이었고, 중재액의 중앙액 200만원은 법원 인용액 중앙액의 약 1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원회의 중재액 평균은 법원 인용액 평균의 약 1/10, 중재액 중앙액은 법원 인용액 중앙액의 약 1/5.5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인용액에 대비한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액이나 중앙액은 법원 인용액에 대비한 위원회 조정액의 그것들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안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하므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참고할 수 있다.

〈표 5-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법원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 및 중재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인용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조정액	32	3,331,250	2,750,000	1,000,000	300,000	10,000,000
중재액	9	2,322,222	2,000,000	2,000,000	900,000	4,000,000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4153 판결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6. 판결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명예훼손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법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판결문에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경우 그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가 7건, 원고를 공인 또는 공직자로 판단한 사례가 5건, 피의사실 보도가 13건, ‘단정표현’이 언급된 사례가 3건, ‘의혹제기’가 언급된 사례가 6건, ‘인신공격’이 언급된 사례가 2건, ‘악의성’이 언급된 사례가 3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1건 등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한 일간지가 성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원고의 알몸 뒷면 사진을 게재한 사안에 대해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⁴⁸⁾ 그 외 한 기업의 이종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안에서 그 기초사실이 허위인 점에다 표현방법 등을 보태어 볼 때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⁴⁹⁾

판결에서 공인 또는 공직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로는 지역 방송사의 보도국장, 대형교회의 대표,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 경제팀장 등이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나 ‘단정표현’과 관련해서 법원은 “‘검찰은 ……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진실 상당성을 부정했다.⁵⁰⁾

그 밖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등 신원을 공개했으나, 피의자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⁵¹⁾ 경찰의 공식브리핑을 토대로 뉴스에서 범죄 혐의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했다 허위사실로 밝혀져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⁵²⁾ 등도 있었다.

판결에서 ‘악의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승소한 1심 판결을 확정판결인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 대해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⁵³⁾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취재기자의 확인의무 소홀의 정도에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⁵⁴⁾ 등이 있었다.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87 판결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15845 판결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단15443 판결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53)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4나45761 판결

5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또한, ‘원고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 원고를 비난하려는 의도에
서 비롯된 ‘인신공격’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⁵⁵⁾가 있는가 하면 반면, 원고에 대
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라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⁵⁶⁾도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판결도 한 건 있었는데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된 사람이 무려 9,860명에 이르므로
제주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제주 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
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⁷⁾

그 밖에, 드라마에 삽입된 연주장면에서 원고들의 연주회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
시된 경우에 관한 판결,⁵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⁵⁹⁾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오기된 자료
를 제공받아 이를 보도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⁶⁰⁾ 등도 주목을 요하는 사례들이다.

55) 광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가합4775 판결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12799 판결
57) 제주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2가합560 판결
58)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가합1300 판결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합48297 판결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96건)

(선고일 순)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01-04	2006가단448780	서울중앙	1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008-01-08	2005가단49587	창원지방	1심	손배	(주)경남신문사 외 2명	인용
2008-01-09	2007가합7035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서울신문사 외 1명	인용
2008-01-10	2002가합560	제주지방	1심	손배	(주)월간조선사	기각
2008-01-16	2006나92006	서울고등	2심	손배	엔에이치엔(주) 외 1명	인용
2008-01-16	2006가합91440 (2006가합100136과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1-17	200다59912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2008-01-18	2007가합7693	수원지방	1심	정정	(주)신경인매일	인용
2008-01-18	2007가합7709	수원지방	1심	정정	(주)신경인매일	인용
2008-01-23	2007가합52978	서울중앙	1심	손배	홍준표 외 2명	기각
2008-01-23	2007카기5982	서울중앙	1심	반론	(주)동아일보사	기각
2008-01-23	2007가합291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문화일보 외 3명	기각
2008-01-30	2004나45761	서울고등	2심	손배	고○○	인용
2008-01-31	2007가합939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2008-02-01	2005다8262	대법원	3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9명	기각
2008-02-13	2007나41852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주)동아일보사	기각/인용
2008-02-13	2007가합90741	서울중앙	1심	정정	(주)문화일보	인용
2008-02-13	2007가합3913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매일경제TV(주) 외 1명	기각
2008-02-13	2007나21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인용
2008-02-14	2005다7573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7명	기각
2008-02-14	2008카합415	서울남부	1심	방송금지가처분	(재)씨비에스	기각
2008-02-14	2007가합6512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조○○	인용
2008-02-14	2007가단5109	창원지방	1심	손배	(주)연합뉴스 외 1명	인용
2008-02-28	2005다2836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7명	기각/인용
2008-02-28	2007가단443737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백○○	인용
2008-03-13	2007다87252	대법원	3심	손배	(주)대전방송 외 1명	기각
2008-03-13	2008다4063	대법원	3심	손배	(주)대전문화방송 외 1명	기각
2008-03-13	2007가합15678	서울남부	1심	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2008-03-19	2007가합8077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 외 3명	기각
2008-03-26	2007나71266	서울고등	2심	손배	(주)뉴스시 외 4명	인용
2008-03-26	2007나71235	서울고등	2심	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각
2008-03-26	2007가단40534	서울중앙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4-03	2007나11033	부산고등	2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2008-04-03	2007가합14910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인용
2008-04-24	2006다532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5-01	2007가단303037	서울중앙	1심	손배	(주)헤럴드미디어 외 1명	기각
2008-05-07	2007가합10462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3명	인용
2008-05-08	2007가합15845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외 2명	인용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05-08	2007가합24153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05-14	2007나75541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2008-05-15	2007가합686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2008-05-15	2007가합2388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인용
2008-05-23	2007가합1170	대구지방안동지원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05-27	2007나11059	서울고등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2008-06-05	2007가합2304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상조뉴스(주)	인용
2008-06-05	2007가합1156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6-12	2007다3569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월간조선사 외 4명	인용
2008-06-19	2007가합21635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주)문화방송	인용
2008-06-19	2007가합2165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6-25	2007가합4913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4명	인용
2008-07-02	2007나60990	서울고등	2심	손배	엔에이치엔(주) 외 3명	인용
2008-07-02	2007나61870	서울고등	2심	손배	(주)프런티어타임스	인용
2008-07-03	2008카기1197	서울남부	1심	반론	(주)문화방송	인용
2008-07-10	2008가합4775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신문(유)	인용
2008-07-16	2007나6676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008-07-23	2007가단448343	서울중앙	1심	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2008-07-24	2007가합11548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주)신경인매일	인용
2008-07-24	2007가합21642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7-24	2008나43008	서울고등	환송후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7-30	2007나106858	서울고등	2심	손배	백○○ 외 3명	인용
2008-07-31	2008가합10694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주)문화방송	인용
2008-08-12	2008가소17113	대전지법천안지원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8-12	2008가소17106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008-08-13	2008카기2967	서울중앙	1심	반론	(주)조선일보사	인용
2008-08-13	2008카기2968	서울중앙	1심	반론	(주)문화일보	인용
2008-08-14	2008가합130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강원민방	기각
2008-08-27	2007가합57072	서울중앙	1심	손배/기타	(주)에스비에스	각하
2008-08-27	2007가합57089	서울중앙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2008-09-10	2007가합9095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문화방송 외 8명	인용
2008-09-11	2008다42201	대법원	3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2008-09-16	2008카합1501	의정부지법고양지원	1심	배포등금지가처분	(주)창작과비평사	기각
2008-09-16	2008가소174816	서울남부	1심	손배	(주)한국방송공사	기각
2008-09-16	2008가소174823	서울남부	1심	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2008-09-19	2008가합252	춘천지법	1심	정정/손배	(주)강원도민일보 외 2명	기각
2008-09-24	2008가합4511	서울동부	1심	정정/손배	김○ 외 2명	인용
2008-10-01	2007나117599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주)경인일보 외 2명	기각/인용/기각
2008-10-10	2008나19484	서울중앙	2심	손배	(주)헤럴드미디어 외 1명	인용
2008-10-23	2008다31263	대법원	3심	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각
2008-10-29	2008가합524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10-31	2008가합2419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기각/기각/기각
2008-11-04	2008가단15443	서울중앙	1심	손배	(주)중앙일보사	인용
2008-11-07	2008나24356	서울중앙	2심	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2008-11-13	2008다53805	대법원	3심	손배	(주)프런티어타임스	인용
2008-11-26	2008카기5818	서울중앙	1심	반론	(주)참언론	인용
2008-12-03	2008가합5362	전주지방	1심	정정/손배	(주)전주방송 외 3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1012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외 1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22762 2007가합53582(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3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301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독립신문사 외 4명	기각
2008-12-03	2006가합1094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3명	기각
2008-12-04	2008나4798	대구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12-05	2008가합1279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피쉬어리뉴스 외 1명	기각
2008-12-05	2007가합961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2008-12-12	2008가합9625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8명	기각
2008-12-17	2008가합48297	서울중앙	1심	손배	(주)중앙일보사 외 3명	인용
2008-12-17	2007가합9678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2008-12-24	2008나55247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인용